

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 허가서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건축구분	중축	허가번호	2015-건축과-중축허가-25 (2015-3380074-1102-25)		
건축주	박정순				
대지위치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74 - 33				
대지면적	193.5000 m ²				
건축물명칭	광안동 근생	주용도	제1종근린생활시설(의원)		
건축면적	148.2000 m ²	건폐율	76.5900 %		
연면적	480.8600 m ²	용적률	203.8600 %		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		

동고유번호	동명칭및번호	연면적(m ²)	동고유번호	동명칭및번호	연면적(m ²)
1		19.8500			

※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2015년08월04일

수영구청장

